

영등포구의회
제221회 임시회

『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0. 5. 11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『영등포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23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,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식품전문 관련 기관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인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안전 확보를 위함.

3. 주요 내용

○ 시설개요

시 설 명 (명칭)	소 재 지	시 설 규 모		시설내역	운영인력
		구분	면적(m ²)		
영등포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	영등포동1가 94-2외 1필지	공공시설 (공공청사)	161	사무실 조리교육실 회의실	8명 (팀장1, 팀원5, 행정팀원2)

○ 관리급식소 수 : 139개소 이내

- 사업규모 : 4억/년(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- 위탁사무 :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일체
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영양관리 실태조사, 순회방문 지도
 -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
 -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유형, 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
 - 대상별(어린이, 조리원, 교사, 부모 등) 위생·영양 교육 실시 등
- 위탁기간 : 2020년 9월 ~ 2023년 8월 (3년)
- 운영방법 :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
- 2020년 소요예산 : 금140,000천원
- 관련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3항(설치·운영)
 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(운영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4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센터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”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 식품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함.

-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,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순회 방문 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어린이, 조리원, 원장, 교사,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,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보급, 식사지도, 정보제공,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2020년 2월 현재 우리구에 설치·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시설을 살펴보면,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총 310개소 중 274개소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로 조사된 바,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 중 88%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.

【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】

(2020.2. 현재, 단위 : 개소)

구분	계	어린이집	유치원	지역아동센터 등	비고
계	310	248	29	33	
100명 미만	274	231	10	33	
100명 이상	36	17	19	0	

- 참고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시가 자치구 내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2020년 2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소가 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.
-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영등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관련 분야에 경험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-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
<개정 2013.12.12>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